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대손충당금 조정

손 금 산입액 조 정	① 채권잔액 (②의 금액)	② 설정률			③ 한도액 (①×②)	회사계상액			⑦ 한도초과액 (⑥-③)
		(ㄱ) 1(2) 100 ()	(ㄴ) 실적률 ()	(ㄷ) 적립 기준 ()		④ 당기계상 액	⑤ 보충액	⑥ 계	
익 금 산입액 조 정	⑧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	⑨ 기중 충당금 환입액	⑩ 충당금 부 인 누계액	⑪ 당기 대손 금 상 계 액 (⑦의 금액)	⑫ 당기 설정충당금 보 충 액	⑬ 환입할 금 액 (⑧-⑨-⑩- ⑪-⑫)	⑭ 회사 환입액	⑮ 과소환입· 과다환입(△) (⑬-⑭)	
채 권 잔 액	⑯ 계정과목	⑰ 채권잔액의 장부가액	⑱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	⑲ 합계 (⑰+⑱)	⑳ 충당금 설정제외 채 권	㉑ 채권잔액 (⑲-⑳)	비 고		
	계								

2. 대손금 조정

㉒ 일자	㉓ 계정 과목	㉔ 채권 명세	㉕ 대손 사유	㉖ 금액	대손충당금 상계액			당기 손비계상액			비 고
					㉗ 계	㉘ 시인액	㉙ 부인액	㉚ 계	㉛ 시인액	㉜ 부인액	
계											

3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 조정

㉝ 대손충당금 환입액 의 익금불산입 금액	익금에 산입할 금액			㉞ 상계 후 대손충당 금 환입액의 익금불 산입 금액(㉝-㉞)	비 고
	㉟ 「법인세법」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in(㉟, ㉞)	㊱ 「법인세법」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ax[0, (㉟-㉞)]	㊲ 차액 Min[㉝, Max(0, ㉟- ㊱)]		

4.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조정

손 금 산입액 조 정	③⑦ 채권잔액 (⑤⑧의 금액)	③⑧ 순자산 장부가액	③⑨ 손금 산입률	④⑩ 한도액 [(③⑦-③⑧)× ③⑨]	회사계상액			④④ 한도초과액 (④③-④⑩)
					④① 당기 계상액	④② 보충액	④③ 계	
익 금 산입액 조 정	④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	④⑥ 기중 충당금 환입액	④⑦ 충당금 부 인 누계액	④⑧ 당기 대손 금 상 계 액 (⑥④의 금액)	④⑨ 당기 설정충당금 보 충 액	⑤⑩ 환입할 금 액 (④⑤-④⑥-④⑦ -④⑧-④⑨)	⑤⑪ 회사 환입액	⑤⑫ 과소환입· 과다환입(△) (⑤⑩-⑤⑪)
관 련 채 권 잔 액	⑤③ 계정과목	⑤④ 채권잔액의 장부가액	⑤⑤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	⑤⑥ 합계 (⑤④+⑤⑤)	⑤⑦ 충당금 설정제외 채 권	⑤⑧ 채권잔액 (⑤⑥-⑤⑦)	비 고	
	계							

5.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 조정

⑤⑨ 일자	⑥⑩ 계정 과목	⑥① 채권 명세	⑥② 대손 사유	⑥③ 금액	대손충당금 상계액			당기 손비계상액			비 고
					⑥④ 계	⑥⑤ 시인액	⑥⑥ 부인액	⑥⑦ 계	⑥⑧ 시인액	⑥⑨ 부인액	
계											

작성 방법

1. 대손충당금 조정

가. ㉑채권잔액란: ㉑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, 그 금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 등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1항에 따른 설정대상 채권(「법인세법」 제34조제2항 제외)으로 합니다.

나. ㉒설정률란: 일반법인은 1/100과 실적률 ($\frac{\text{해당 사업연도의 ㉒과 ㉓의 합계금액}}{\text{직전사업연도 ㉑의 금액}}$) 중 큰 비율을,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2/100(201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/100)와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"○"표 합니다. 다만, 영 제61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, 채권잔액의 2/100(201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/100) 또는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"○"표 합니다.

다. ㉕보충액란 및 ㉖당기 설정충당금 보충액란: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.

라. ㉗당기 대손금 상계액란: ㉗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
마. ㉘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: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.

2. 대손금 조정

가. ㉚금액란: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고, 대손충당금상계액의 ㉙부인액란에는 부당상계액을 적으며, 당기 손비계상액 중 ㉚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.

나. ㉛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㉜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, ㉜가 과다환입(△)인 경우에는 ㉝충당금부인누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합니다.

다. 대손충당금 상계액 중 ㉙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, 당기 손비계상액 중 ㉚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.

3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 조정

㉞~㉟금액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23에 따라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신청을 한 법인만 작성합니다.

4.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조정

가. ㊱채권잔액란: ㊱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, 그 금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설정대상 채권으로 합니다.

나. ㊲한도액란: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 등의 ㊱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㊳순자산 장부가액(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,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)을 뺀 금액에 ㊴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

다. ㊵손금산입률란: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을 적고,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을 적습니다.